

## 질의·서면 답변서

질의	신교선	위원	답변	평창군수 (환경보호과장)
회의	제58회 평창군의회 (임시회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<p>〈질의요지〉</p> <p>○ 진부쓰레기매립장 부담협약서 사본 제출</p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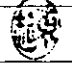
〈답변〉

○ 별첨

#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소

우 232-94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5-6 / 전화 (0374) 32-6417/ 전승 (0374) 33-5461

문서번호 오대운 2320-59-  
2330  
시행일자 1997. 12. 20. ( - )  
경유  
수신 평창군수  
참조 환경보호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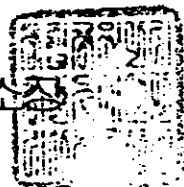
선결	과산	회통	지		
접수	일자	97. 12. 24	시결		
	시간				
처리과	번호	1584	재공		
담당자		(인)	공	장	
			람		

제 목 진부면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위탁시행 계약서 송부

1. 오대운2233-656('97. 10. 9.)호 및 환경67511-1678('97. 10. 13.)호 관련 임니다.
2. 위호 관련 진부면 위생매립장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위탁승인 되었기에 위탁시행 계약서 2부를 송부 하오니 직인날인후 1부를 우리사무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리며
3. 위탁시행 계약즉시 귀군과 체결한 진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동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에 의거 우리사무소 부담사업비를 귀군에 납입코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- 첨 부 1. 내무부 위탁시행 승인 공문 시본 1부.  
2. 진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위탁시행 계약서 2부. 끝.

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소장



# 진부면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시행계약서

평 창 군 수

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소장

## 진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시행계약서

제 1조 (목적) 본 계약은 진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평창군수 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장 (이하 "을"이라 한다)간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제 2조 (공사내역) ①공사명 : 진부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

②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2리 전 1766외 11필지

③설치규모 : 150,000㎡ - 200,000㎡

④사업기간 : '97. - '98. 12.

⑤소요사업비 : 4.040백만원(공단 500백만원, 평창군 3.540백만원)

제 3조 (계약기간) ①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'98. 12. 31.까지로 한다.

②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계약기간내 공사 완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 "을"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 4조 ("갑"의 책임) ①"갑"은 공사비 500백만원이외의 공사비 부담한다.

②"갑"은 설계서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본 공사를 완료한다.

③"갑"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,회계정비,공사시공감독,변경설계서 작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업무,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5조 ("을"의 책임) ①"을"은 총공사비중 500백만원을 부담한다.

②"을"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"갑"에게 필요한 사업을 협조한다.

제 6조 (착·준공 통보) "갑"이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준공시황을 "을"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설계변경) ①"갑"은 본 사업 시행중 주요공사계획을 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예산 증감이 있을시에는 "을"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변경한다.

기타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"갑"이 선조치후 "을"에게 통보한다.

제 8조 (기성 및 준공) ① 기성경사는 "갑" 책임하에 시행한다.

② "갑"은 공사준공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"을"에게 통부한다.

제 9조 (감사업무 협조) ① "을"이 국가등으로부터 동 사업(국립공원개발사업)의 부담액에 대한 감사를 받을시 "을"의 요청에 의거 "갑"은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등을 제출하는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자금지급) "갑"은 사업비 지불을 위한 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 "을"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또한 지불소요시기 10일전에 "을"에게 자금요구서를 별도 제출하고 "을"은 요구서가 접수되면 "갑"이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전액(또는 일부)을 입금한다.

제 11조 (정산) "갑"은 사업이 종료된후 10일이내에 정산서를 통보한다.

제 12조 (계약해제 및 해지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 13조 (회계규정) 본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예산회계법령 및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. 다만, 이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은 "갑"의 회계규정에 의한다.

제 14조 (이의해석)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"갑" . "을"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"갑"과 "을"이 협의 해석한다.

제 15조 (기타사항) 전 각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"갑", "을"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 부

# 칙

제 1 조(시행일) 본 계약서는 "갑" . "을"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 조(계약서 관리)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"갑" . "을" 쌍방이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작성 "갑" . "을"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1997년 12 월 23 일

(갑) 평 창 군



(을)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



“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가꿀 미래의땅”  
**평 창 군**

우232-800/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-2 / 전화(0374)30-2336 / 전송33-6356 / 담당자 김재열

문서번호 환경 67511- 1618

시행일자 1997. 10. 13.

**【제 1 안】**

발음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군 수
보존		김영욱 이13
부군수	재열	
과장	장연	폐기물관리계장 김영희
기안	장연	협조

**제목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체결**

환경57300-1534호('97.9.25)와 관련하여 평창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와의 진부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한 협약을 붙임과 같이 체결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코자 합니다.

붙임 : 진부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시행 협약서 2부. 끝.

**【제 2 안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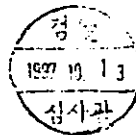
발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

제목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협약서 송부

1. 항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소에 감사드립니다.

2. 환경57300-1534호('97.9.25) 및 오대운2233-656호('97.10.9)와 관련하여 귀사의 회신 내용대로 협약체결하고 협약서를 송부하니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진부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시행 협약서 1부. 끝.



**평 창 군 수**

-진부쓰레기위생매립장 공동조성 및 사용에 따른-

# 協 約 書

평 창 군 수

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소장



#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 및 사용에 관한 협약서

제 1조(목적) 본 협약은 평창군(이하 "갑"이라 칭한다)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(이하 "을"이라 칭한다)간에 쓰레기 위생매립장(이하 "매립장"이라 칭한다)의 공동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설치위치 및 규모) 매립장의 설치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위 치 : 평창군 진부면 송정2리 전 1766번지의 외 11필지
- ② 설치규모 : 150,000㎡ - 200,000㎡(15년이상 사용가능)
- ③ 설치소요사업비 : 4,040백만원 평창군(군비) 3,540백만원  
공 단(국비) 500백만원

제 3조(설치추진 기본원칙) 매립장은 "갑"이 부지확보, 설계, 시공, 입찰, 공사, 감독, 준공 등을 책임진다.

제 4조(예산 및 자금배정)

- ① "을"은 본 협약체결을 하고 내무부 위탁 승인후 예산(전액 또는 일부)을 "갑"에게 배정(전도)한다.
- ② "갑"은 공사비 지불을 위한 자금소요계획서("을"의 부담분)를 작성 "을"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또한 지불소요시기 20일전에 "을"에게 자금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"을"은 요구서가 접수되면 "갑"이 지정하는 거래은행구좌에 배정(송금)하여야 한다.

제 5조(설계변경)

- ① "갑"은 공사 시행중 주요공사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증감이 있을시에는 사전에 "을"과 협의한다.
- ② 기타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을때는 "갑"이 선조치후 "을"에게 통보한다.

제 6조(운영관리)

- ① 매립장은 "갑"이 운영 관리한다.
- ② 반입되는 쓰레기는 평창군관내 오대산국립공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한한다.
- ③ 수거되는 쓰레기는 "을"이 매립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동안 처리비 등은 무료로 한다.
- ④ "을"은 발생한 쓰레기를 성상별(가연성, 불연성),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⑤ 동 매립장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은 "갑"이 부담한다.

제 7조(사용기간)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매립장의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 8조(협의조정)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

# 부 칙

제 1조(시행일) 본 협약은 "갑"과 "을"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.

1997년 10월 일

(갑) 평 창 군

(을)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관리사무

